

## 스포츠는 인권이다

스포츠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, 개인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기여합니다.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능력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.

##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

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다른 사람과 사회, 세계와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장벽은 없어야 하며 국가 등은 이 기회를 적절히 보장해야 합니다.

## 스포츠 인권의 원칙

- 1 모두가 건강과 여가를 누리는 '모두를 위한 스포츠'
- 2 훈련과 경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기
- 3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기
- 4 정부, 교육기관, 체육단체, 지도자와 선수는 스포츠에서 평등과 포용을 실천하기



**1331**  
인권상담센터

www.humanrights.go.kr

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2F

체육지도자는  
인권옹호자로서의 책임을  
다해야 합니다.

체육지도자는 선수의 신체를 단련시키고 운동 기량을 지도하는 것 뿐 아니라 선수의 인권을 지키는 옹호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.

- 지도자는 선수들을 성별, 능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.
- 지도자는 스포츠 활동에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, 운동과 휴식, 사생활과 학습이 균형을 이루고 적절한 자기 계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.
- 또한 훈련과 경기에서 폭력과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.

지도자를 위한

#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



##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

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기관과 단체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, 안전하고 평등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 이 안내는 인권옹호자로서 체육지도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. 가이드라인 전체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국가인권위원회



**체육지도자는 폭력과 괴롭힘, 차별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합니다.**

**선수들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!**

- ◆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도 없어야 하며, 훈련을 가장한 체벌에 유의합니다. 훈련이나 경기대회에서의 실수를 이유로 단체기합이나 체벌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선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스포츠 장비를 던져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선수들을 대화성적이나 운동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선수들 사이에서 지시, 청소검열, 단체기합 등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.

**선수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!**

- ◆ 훈련과 경기 참가 여부와 방법, 프로그램에 대해 선수의 의견을 반영합니다.
- ◆ 선수의 사생활을 보장하고, 합숙이나 기숙사 생활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**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!**

- ◆ 선수계약, 대회 출전권을 두고 대가 요구나 회유, 협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선수들에게 인권에 반하는 규칙과 벌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

**체육지도자는 선수와 참가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.**

**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!**

- ◆ 선수들에게 적절한 영양과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. 선수의 신체적,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 훈련 시간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.
- ◆ 여성 선수는 생리, 임신, 출산 등에 따른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.
- ◆ 선수의 휴식과 귀가 시간을 지키고, 변경할 때는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습니다.

**선수들의 컨디션에 이상과 무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!**

- ◆ 훈련과 경기에서 신체적 이상을 초래하는 무리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신체 능력과 운동 기량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약물을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선수의 신체적 이상, 침체, 불안 징후를 살피고, 필요시 상담과 진료를 받게 합니다.
- ◆ 선수들 사이에 폭력이나 괴롭힘 피해가 의심될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◆ 인권보호 매뉴얼을 숙지하고, 인권 관련 담당자나 기관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.
- ◆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 참여합니다.



**체육지도자는 선수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**

**훈련 과정에서 선수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!**

- ◆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
- \* 신체 접촉은 신체를 이용하거나 지시봉 등 도구를 이용한 접촉 모두를 의미합니다.

**특정 선수에게 특혜를 주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!**

- ◆ 허가를 받지 않은 개별적인 훈련이나 상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전지훈련이나 경기대회 참가 시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선수에게 마사지, 신체 주무르기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◆ 경기대회 참가, 선수계약 등을 이유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.



**특pecially 아동 스포츠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.**

**아동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!**

- ◆ 훈련과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존중합니다. 또한 두 발 형태나 장신구의 착용 등 개성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.
- ◆ 훈련과 경기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.

**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!**

- ◆ 부상 위험에 대비하고, 부상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와 재활 조치를 합니다.
- ◆ 과도한 훈련을 피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훈련을 합니다. 충분한 휴식 시간과 아동들 사이의 교류 시간을 보장합니다.
- ◆ 신체와 정신건강에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불필요한 체중 조절을 강요하지 않으며 충분한 영양섭취를 돕습니다.
- ◆ 경기에서 지거나 탈락하더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.

**아동이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!**

- ◆ 합숙, 훈련, 경기 일정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관찰을 허용합니다.
- ◆ 폭력이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의 회복을 돕습니다.